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제안경위

- 제안자 : 이필레 의원 외 8인
- 발의일 : 2018. 04. 03.
- 회부일 : 2018. 04. 05. (의안번호 : 18-32)

2.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 등에 필요한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어린이집”을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조례 제13조 제3항 개정)
-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최초 위탁기간 범위인 “5년 이내”로 변경(조례 제22조 제2항 개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 시행관련, 규제·부패·갈등·성별 등 분야별 사전영향평가 협의사항의 경우 해당내용 없음

5. 검토의견

가. 법규상 보육시설 위탁·재위탁 기간변경 가능여부 : 가능

-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등을 위해 제정된 이견 조례의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지방단체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필요시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 또는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되므로 법령상 위탁 및 재위탁 기간변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마포구 보육시설 위탁 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구립어린이집 65개소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한 마포구 지역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2.22일 상암동에 설치한 1개 시설이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인이 최초 위탁후 재위탁 1회 및 신규위탁 1회를 받아 8년간 운영하고 있음
- 마포구 지역내 “구립어린이집”은 65개소로 최근 5년간 최초 신규위탁된 시설이 27개, 최초 신규위탁후 재위탁된 시설이 38개소가 있음.

계	신규위탁 어린이집	신규위탁 후 재위탁 어린이집
65개소	27개소(42%)	38개소(58%)

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 : 필요함

- 영유아의 보육 “구립 어린이집”과 보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편성과 정보의 수집·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
-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80%에 해당하는 20개구가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우리구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위탁체가 단기간 잦은 교체로 인한 혼선과 행정정력 낭비 및 보육서비스 품질저하 우려 등의 문제점을 줄이고 보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구민에게 좀더 향상된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현재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 종합의견

이필레 의원의 8분의 의원께서 2018.4.3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위임된 사무에 해당되므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위탁 기간 또는 재위탁 기간을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추세임.

아울러, 2018.4.3일부터 4.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

따라서, 우리 마포구도 좀 더 향상된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장기간 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법규 준수 여부 및 위탁계약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현황 1매

[참고자료]

서울시 자치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현황

연번	자치구	위탁기간	비 고
1	강동구	위탁 · 재위탁 5년 이내	한차례만 재위탁
2	강북구	"	재위탁횟수 제한규정 없음
3	강서구	"	한차례만 재위탁
4	관악구	"	"
5	광진구	"	"
6	구로구	"	"
7	은평구	"	재위탁횟수 제한규정 없음
8	동대문구	"	"
9	서대문구	"	한차례만 재위탁
10	서초구	"	"
11	성북구	"	재위탁횟수 제한규정 없음
12	성동구	"	한차례만 재위탁
13	송파구	"	"
14	양천구	"	"
15	영등포구	"	재위탁횟수 제한규정 없음
16	용산구	"	"
17	종로구	"	한차례만 재위탁
18	중구	"	"
19	중랑구	"	재위탁횟수 제한규정 없음
20	노원구	"	"
21	동작구	"	한차례만 재위탁
22	도봉구	위탁 5년, 재위탁 3년	재위탁횟수 제한규정 없음
23	금천구	위탁 3년	한차례만 재위탁
24	강남구	위탁 5년, 재위탁 3년	"
25	마포구	위탁 5년, 재위탁 3년	"